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1호의2서식] <신설 2021. 12. 30.>

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·재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80일

신청인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검사기관	기관명	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
	기관장 성명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역량의 (인증 , 재인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장 귀하

제출서류	1.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사본 2.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3.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4. 유전자검사서비스 홍보 및 판매 계획서(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) 5. 유전자검사 방법, 결과 분석 및 제공 등 유전자검사서비스 관리계획서(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) 6.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계획서 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역량의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10,000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(현지 확인)	→	결재	→	인증 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 (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장)		처리기관 (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장)		처리기관 (보건복지부장관)		처리기관 (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장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